



2018년 제3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대표협의체회의 결과보고

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
2018년 제3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대표협의체 회의 결과보고

-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(안) 및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(안), 2018년 제2차 추경예산(안),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유효기간 변경(안) 심의를 위한 『2018년 제3차 대표협의체 회의』 결과 보고임.

개 요

- 일 시 : 2018. 09. 20.(목), 15:00
- 장 소 :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
- 참석인원 : 총 28명
 - ▶ 대표협의체 위원 : 35명중 19명 참석 (54.2%)
 - 참석위원 : 26명
이귀선, 윤학수, 양진하, 김민수, 김병국, 김복희, 김운곤, 김형인, 김혜경, 문병근, 박은순, 박종아, 박효숙, 신재권, 심은자, 양만호, 연규철, 이종문, 이종성, 이현상, 임숙자, 정선영, 조병호, 하경희, 한경희, 황재경. 이상.
 - 미참석위원 : 10명
염태영, 김명욱, 김종동, 류관숙, 민소영, 신화균, 이경아, 안병은, 유인숙, 유혜영. 이상.
 - ▶ 복지허브화추진단 : 박미숙, 김수정, 이은주, 김남화 4명
 - ▶ 협의체사무국 : 박창재, 임복희, 허운범, 신다희, 김기강 5명

주요내용

1. 보고사항

-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
- 위원 변동사항

2. 안건심의

-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(안) 심의
-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(안) 심의
- 2018년 제2차 추경예산(안) 심의
-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유효기간 변경(안) 심의

회의결과

I. 보고사항

① 2018년 그간의 추진실적(1~8월)

- 의견 없음

② 그간의 추진사항(6~9월) 및 향후 계획(10~11월)

- 의견 없음

③ 위원변동사항

- 대표협의체 : 위촉 3명, 해촉 2명(사임 등)
- 실무협의체 : 위촉 6명, 해촉 6명(인사이동 등)
- 의견 없음

II. 안건토의

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(안)

○ 회의결과 : 원안대로 심의

○ 변경내용

- 적용대상 : 2018년도 시행계획
- 추진사업 : 5대 전략, 11대 중점추진사업, 70개 세부사업

(단위 : 개, 천원)

구 분	2018년도		증 감	증감율	비 고
	시행계획	변경계획			
사업건수	70	70	0	0	
사업예산	80,200,145	92,118,730	11,918,585	14.9%	

○ 변경사유 : 대부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수준 변경임.

○ 논의내용 :

이 름	내 용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○ 세부사업 변경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답변은 누가 하세요?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사무국과 담당사업 수행자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○ 여기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실무부서 아니면 대답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. ○ 세부항목을 조정하는데 있어 20쪽 전체 내용 중 예산증감부분에서 특히 감소된 부분, 특히 사회적인권강화 등 예산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세부내용 답변을 못할 것임.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실제 부서에서 오셔야 논의가 될 것임. ○ 실행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, 다른 시군구의 경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을 수원시는 예산이 있는데도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임. ○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해야 답변이 될 것임. 특별히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만 대표협의체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안함.

이 름	내 용
김수정 (맞춤형지원 팀장)	○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
하경희 (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)	○ 분과에서 검토해줬으면 하는 게 내년부터 4기 시작이 되는데 지속사업들이 그 중 4기 사업들을 채우면서 목표치나 예산 설 정했는데 3기 4년차의 변경된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4기에는 반 영이 안 될 수도 있음. 일관성 있게 들어가는지를 분과에서 검 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

② 제4기 수위시지역사회보장계획(안)

○ 회의결과 : 원안대로 심의

○ 수립내용

- 비 전 : **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,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!**
- 사업현황 : 11대 추진전략, **85**개 세부사업

연번	추진 전략	사업구분				
		계	신규	지속	지속 보완	약속
	계	85	24	41	10	10
1	누구나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	9	1	5	1	2
2	맞춤형서비스 및 제도 구축으로 수원형 주거안정 실현	5	3		1	1
3	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교육문화 기회 확대	6	2	3		1
4	시민이 누릴 권리, 환경 살리go 건강 올리高!	6	3		2	1
5	누구나 쉽게 찾는 수원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	10	2	5	1	2
6	영유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양육친화도시 수원	8	2	6		
7	아동·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	11		9		2
8	노인인권과 돌봄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고령친화도시 구현	6	3	3		
9	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 구축	9	2	7		
10	이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	6	1	2	2	1
11	성평등 실천! 여성의 권리 보장 확대!	9	5	1	3	

• 소요예산

(단위 : 개, 천원)

연차별	총 계	도비	시비	기타	비고
계	190,502,327	6,807,306	165,972,101	17,722,920	
2019	52,046,809	1,640,015	46,126,064	4,280,730	
2020	51,729,676	1,681,325	45,667,621	4,380,730	
2021	44,373,016	1,722,453	38,169,833	4,480,730	
2022	42,352,826	1,763,513	36,008,583	4,580,730	

총 계	신규	지속	지속보완	약속
190,502,327	17,487,160	142,372,045	11,664,122	18,979,000

○ 논의내용

이 름	내 용
양만호 (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)	○ 신규와 약속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?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민선7기 공약에 대해 사회보장영역에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무분과에서 선정, 신규사업은 12개 분과에서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안한 것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음
황재경 (실무협의체 위원장)	○ 연차별 계획에서 삭감이 되거나 조정사항이 발생, 1차적으로 부서별 간담회에서 조율을 한 부분이나 최종 확정되기까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어떤 것일지 고민이 되는 지점임
김복희 (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)	○ 아동컨트롤타워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지?
허운범 (사무국 간사)	○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함.
김복희 (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)	○ 의견을 제안했으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그 긴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음.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프로그램인지 센터인지 고유의 영역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고, 아동복지관으로 다 귀결이 되어 그 기능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자고 마무리됨

이 름	내 용
하경희 (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)	○ 그 사업은 예산 확보의 문제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서 다소 무리하다고 판단되었음.
김복희 (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)	○ 아동컨트롤타윈의 존재가 있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업 축소도 아니고 왜 없어져버렸는지 알 수 없음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9월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하여 수정, 보완할 사항은 추가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더 확정적이므로 그 때가 예산 확정되었을 때 실행력을 위한 본계획으로 이해하면 됨. ○ 여기에서 누락되었다고 끝난게 아니라 연차별 시행계획 때 논의하면 부서에서 다시 검토할 것임. 부서와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
이귀선 (대표협의체 위원장)	○ 사무국에서 사업이 중도에 없어졌거나 그래야만 했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세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음.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. 의논을 다시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안을 하도록, 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되 갑자기 사라져서 삭제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하도록 하면 좋겠음
윤학수 (대표협의체 부위원장)	○ 계획 단계부터 공청회, 원탁토론 등 대표협의체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었음. 시민의견 수렴이 있었던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, 그러나 공청회 시 나왔던 얘기 중에 타 기수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자체사업으로만 구성하다보니 그 범위가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 있음
김남화 (맞추형지원팀 주무관)	○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, 아이에스사업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았음.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확정되지 않아 힘들고, 아이에스사업 같은 경우 미반영되었다가 의견 수렴하여 포함하게 됨. 그래서 전체 사업 수가 84개에서 85개 사업으로 늘어난 것임
양만호 (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)	○ 42쪽 마을관리소(가칭) 뜻이 궁금함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운영, 개보수 부분을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해 진행했었는데,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불편 발생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민센터 주심으로 마을관리소 설립하여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임

③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(안)

○ 회의결과 : 원안대로 의결

○ 추경사유

-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비 183,985,000원 추가 편성
- 운영비 과목 변경
 - 시간외 수당 → 급여 : 120,000원
(직원 둘째 출산으로 인한 가족수당 증액)
 - 차량비 → 여비 : 800,000원
(보장계획 업무 등 출장횟수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)
 - 수용비 및 수수료 → 임차료 : 100,000원
(입주 건물 공동구역관리 업체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)

○ 세입세출 총괄표

단위 : 천원

세입					세출				
관	항	예산액 (A)	기정액 (B)	증 감 (A-B)	관	항	예산액 (A)	기정액 (B)	증 감 (A-B)
총계		822,666	638,681	183,985	총계		822,666	638,681	183,985
보조금 수입	소계	807,007	623,022	138,985	사무비	소계	325,022	325,022	0
	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	325,022	325,022	0		인건비	269,464	269,464	0
	사회복지 사업보조	179,000	179,000	0		업무 추진비	18,000	18,000	0
	기타 사업보조	302,985	119,000	183,985		운영비	37,558	37,558	0
자부담	자부담	3,245	3,245	0	사업비	소계	497,644	313,659	183,985
이월금	이월금	12,414	12,414	0		일반 사업비	182,245	182,245	0
						기타 사업비	315,399	131,414	183,985

4]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유효기간 변경(안)

○ 회의결과 : 원안대로 의결 (찬성 17명, 반대 4명)

○ 변경사유

-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관리를 위해, 후보자 선정 시 2년의 유효기간을 두었음.
-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배수 증가(2배수 → 3배수)되어,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- 2018년 제2차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 회의(2018. 7. 11.)에서, 더욱 많은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.

○ 변경내용

구 분	현 후보자 수	유효기간	⇒	변경(안)
2016년 선정 후보자	12명	2016. 5. 26. ~ 2020. 6. 25. (2년 연장)		삭제
2017년 선정 후보자	7명	2017. 5. 24. ~ 2019. 5. 23.		삭제
2018년 선정 후보자	11명	2018. 6. 26. ~ 2020. 6. 25.		삭제

○ 논의내용 :

이 름	내 용
신재권 (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 본부장)	○ 유효기간이 무엇을 뜻하는지?
이종성 (수원시니어클럽 관장)	○ 애초에 유효기간을 둔 이유가 뭘까요?
박창재 (사무국장)	○ 사회복지법인이 16개가 있는데 봉사의 개념이라서 사기업의 외부추천이사와는 다름. ○ 유효기간을 둔 이유는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들이 정채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2년 기간을 두고 순환하려고 했는데

이 름	내 용
	<p>부족한 상황이 발생해버림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효기간 제한을 풀고자 하며 인력풀 25명을 추천해서 그 중 3분의 1만 선정하는 구조임 ○ 참여 확대의 폭을 마련하기 위함임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해야하나요?
박창재 (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네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럼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운데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법인들이 종교성을 띄고 있다 보니 개신교에 불교를 추천하기에는 제약이 있음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지가 법인이사회에 맞춰주기 위해 외부추천이사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협의체가 추천해주는 이사에 따라야 하는데 왜? 법인의 의견을 다 수렴할 필요는 없음. ○ 법인만의 입장을 좇는 것은 아니라고 봄.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,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이해하고 동의를 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알고 해야 함. ○ 유효기간 삭제보다는 적극 홍보하는 분위기가 맞다고 봄
양진하 (수원시의회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대의견임. 지원 조건 중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아 조건을 완화하면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음.
박창재 (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겸직금지사항이 생김.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다 후보자에서 제외됨. 대표협의체 위원이면 다 가능함. ○ 다른 시군구는 한 명의 외부추천이사가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수원시 제도의 취지가 맞지 않다고 1:1 매칭만 가능한 상황임. ○ 그래서 인력 확보는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없애는 걸로 안전 상정하였음
이종문 (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지사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람을 두고 유효기간이라는 워딩이 좋지 않음.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 건의함. 연임기간 등
이종성 (수원시니어클럽 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고 심의가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안되는(탈락하는) 후보들이 있다면 신청자격유지기간 동안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해당 후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임 ○ 보완하기 위해 신청자격유지기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됨

이 름	내 용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배수에서 3배수면 안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짐. ○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전원 신청해놓는 것으로 하자. 최종적으로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큰 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함
하경희 (아주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바로 삭제하는 것보다 연임가능 제도 마련 등 과도기를 거쳐야 할 것임
신재권 (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 본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추천이사를 만들었던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풀에 넣는 건 안되는 부분이고 리스크가 큼. ○ 한 사람이 몇 개 기관씩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올 듯함
황재경 (실무협의체 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에서 특히 하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큼. ○ 함께 이사 상을 모색해본 경험이 없으니 위원들 간 정보가 너무 천차만별임. ○ 이사와 법인이 다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니 서로 통일된 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, 배출하여 순번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연임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논의 필요함
양만호 (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계가 되었는데 거부할 수 있는지?
박창재 (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부한 적은 없었지만 다시 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함
임숙자 (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을 가는 것은 조심스럽고 두 곳 정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인력풀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 1회 이사회 하는 곳도 있으므로 신청 시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직접 쓰는 것으로 참고해도 좋을 것임
양만호 (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 전문위원이 되어 하고 있는데 다들 공감하는 것처럼 법인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안 맞음. ○ 법인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교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음. ○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명성, 전문성, 컨설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음

이 름	내 용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번에 바꾸게 되면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므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함. ○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결론이 안 날 것임
이현상 (보현선원거사회 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년의 연임, 최대 8년 등 연장기간을 두는 것이 낫지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봐야 하는 것이고 삭제하는 것은 안 됨
정선영 (수원여성의전화 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예 삭제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것임. 공감은 하나 추후 다시 논의 필요하여 보류했으면 함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음 실무의 어려움이 있는지?
허윤범 (사무국 간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보자로서의 자격 유지이기 때문에 임기보다는 후보자 자격에 초점을 맞춤. 장단점은 있으나 실제 유효기간 두는 게 별 의미가 없음.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견정리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기를 두지 말자. 2. 4년, 8년 임기를 두자. 3. 횟수는 정하고 보류해서 결정하자.
이종성 (수원시니어클럽 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활성화를 위해 자격유지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먼저 결정했으면 좋겠고 삭제한다면 그에 따라 외부추천전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는 바임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의 임기가 아니라 신청가능 기간임. 뽑힌 분들 중에서 추천해드리는데 그 자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을 하자. ○ 이사가 되는 기간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는 기간을 없앨거냐 둘 거냐임
김민수 (광고장애인주가보호시설 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냥 없애자
신재권 (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 본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속 머물러있는 거면 그냥 삭제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음
양만호 (성공회 나눔의 집 원장사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험상 추천하는데 법인에서 꺼리는 게 뭐냐면 시민사회단체 경력이 많거나 그러면 걸림. 결격사유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걸릴 것임
이종문 (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지사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굳이 필요가 있나

이 름	내 용
김병국 (해뜨는집 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임기간인지 자격유지기간인지 헛갈려서 혼란이 있음 ○ 거수로 하자
이귀선 (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없애자는 의견을 원안으로 하고 변경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으로 거수 ○ 결과 : 원안동의 17명, 반대의견 4명 ○ 참석자의 과반수이므로 통과,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

기타 논의사항

○ 논의내용 :

이 름	내 용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벤치마킹 13쪽, 공무원이 1명임. 협의체 활동이 거버넌스 활동인데 1명 가서는 안 될 것임. 개인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임. 민14명에 공무원 1명은 아님. 함께 가서 논의하고 배우러 가는 것인데 왜?
양진하 (수원시의회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월 예정인데 왜 10월로 시기가 늦어진 것인지?
박창재 (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감시기 피했음. 보장계획도 9월말까지여서, 지방선거 이후 행감이 10월에 잡혀 일정 조정하다가 그렇게 됨. 향후에 반영하겠음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지가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이 아니라 왜 수립되었는지 의미를 두고 추진했으면.. ○ 그리고 양만호 위원이 신규와 약속사업의 차이가 뭔지부터 질문한 것처럼 보장계획 용어가 어려우면 안 됨. 친절하게 설명하고 한 눈에 파악하기 쉬워야 함. 지금은 사회복지전공자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음. 이주민같은 경우에도 이주민, 다문화 용어 혼선이 있음. 이주민 분야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도 선입견으로 싫어함. ○ 수원시부터 바뀌어나가자.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장계획이 되었으면 함

이 름	내 용
황재경 (실무협의체 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치조례도 제정 중인데 강제력이나 효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. 보장계획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. 실행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..
박종아 (수원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정계획 조직이어서 상대적으로는 강제력이 있어 보임. 박창재 국장님과 도모하겠음
윤학수 (대표협의체 부의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번 4기 계획은 기존과 달리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주거환경 다 들어갔는데 실무부서 간담회 순회 하면서 거버넌스 기구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계획수립단계뿐만 아니라 실행, 평가단계까지 함께 해야 전달될 것 같았음. ○ 부서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, 추진단장님께서 잘 챙겨줬으면 함
박창재 (사무국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행력 확보에 대한 근거는 부서의 의지와 그 결과 나타나는 예산 확보임. ○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들이 의회에 예결로 올라가니 관계를 조정할 필요. ○ 예산팀과 충분히 논의,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함. 법적인 위상은 대표협의체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율되어버림
김민수 (광고장애인주거보호시설 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 1년 가까이 어렵게 논의해서 결의했는데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었음. 없애는 것도 보완장치, 담당 주무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정되었는지 절차가 필요. 계획이 폐지되거나 수정되면 대표협의체 결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게끔 장치가 필요.
황재경 (실무협의체 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적인 문제. 공공위원 참석률이 낮고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 어려움. 참석 주무관은 반대도 못하고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간담회 때 되어서야 그 때 팀장, 과장 동석했을 때 의견 말함. 독자적으로 사업 제출 안 됨. ○ 공공위원의 자율성 확보는 고민.
김혜경 (장안구보건소 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되도록 실무분과에 참여하려고 하며, 분과장이 공공의 팀장이고 주무관 동석하는데 전달만 하는 역할이고 주무관들은 결정권한이 없음. 공공위원장을 팀장이 아니라 그 위에 과장, 국장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과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 것. ○ 참석 위원도 주무관이 아니라 팀장이 해야 결정권한이 있음. 분과장을 부서장급으로 선임해야 논의가 시작되고 협치가 됨. 민간만 와서 논의하지 반드시 공공위원이 와서 참석하도록 해야 함. 직책을 격상시켜야 회의가 실제로 돌아갈 것.

이 름	내 용
김수정 (맞춤형지원 팀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임
김병국 (해뜨는집 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과장은 한 명인데 모든 협의체에 참석이 안 될 것
박은순 (경기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각 관련 부서에서 옴. 협의체 구성하고 조례 제정 시 당연직으로 6급 팀장 넣은 것도 전국 최초였음. 그 때도 공공에서 반발이 심했음. 10년 이상이 지나고 지금 보니 놀라운 변화임.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수원시가 최초임 ○ 역사적으로 팀장과 주무관만 워크샵에 참석해서 과장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후 과장님들에게 간담회하는 것도 생겨난 과정들을 보면 실무분과에 부서장이 온다는 것은 좋은 변화 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동의함

참고자료

- 1) 관련사진
- 2) 회의록

[참고자료 1] 관련사진

2018년 제3차 대표협의체회의(2018.9.20.)

